

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규조문대비표(2022.05.30 개정)		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u>제5조(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)</u>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 <u>제 6 조(수탁의 거부) ① ~ ④ (생 략)</u> ⑤ 회사는 <u>제4 조 또는 제5조에</u>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<u>제 7 조~제 12 조</u> (생 략) <u>제 13 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</u>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. 1. (생 략)	<u><삭 제></u> <u>제 5 조(수탁의 거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u> ⑤ 회사는 <u>제4 조에</u>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. <u>제 6 조~제 11 조</u> (현행과 같음) <u>제 12 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</u>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. 1. (생 략)	기본예탁금 규제 폐지에 따라 삭제 기존 제 5 조 삭제에 따라 정비 순번이동 순번 이동 및금투업규정 (§4- 36⑬호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. 가. ~ 마. (생략)	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.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</u>	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)
<u>제 14 조~제 20 조</u> (생략) 제 <u>21 조</u>(거래제한) ① 계좌가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<u>제 22 조~제 28 조</u> (생략)	<u>13 조~제 19 조</u> (현행과 같음) 제 <u>20 조</u>(거래제한) ① 계좌가「전기통신금융사기 <u>피해 방지 및</u>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<u>제 21 조~제 27 조</u> (현행과 같음)	순번 이동 순번이동 및 조문정비

〈별첨〉

2. 제 10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방법은 다음과 같다.
3. 제 10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순서는 다음과 같다.
4. 제 10조제 3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요율은 다음과 같다.
5. 제 15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〈별첨〉

2. 제 9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방법은 다음과 같다.
3. 제 9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순서는 다음과 같다.
4. 제 9조제 3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요율은 다음과 같다.
5. 제 15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순번이동